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의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 2008010073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8.12.10.]

www.pizza-maru.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12.19.]

[피자마루]

정보공개서

(주)푸드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푸드존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77, 4층, 5층, 6층(화곡동, 존스프라자)

전화 : 02-6949-0474

팩스 : 02-2607-1085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관리 1544-2012

목 차

| | |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 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주)푸드존 | 피자마루 외5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77, 4층, 5층, 6층(화곡동, 존스프라자)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2007.09.04 | 2007.09.13 | 이영준 | 02-6949-0474 | 02-2607-1085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3748724 | 사업자등록번호 | 113-86-16326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대표이사 | 이영준 (주)푸드존 | 피자마루 외5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77, 4층, 5층, 6층(화곡동, 존스프라자)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이영준 | 02-6949-0474 | 02-2607-1085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사내이사 | 이지훈 | 피자마루 외5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77, 4층, 5층, 6층(화곡동, 존스프라자)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이영준 | 02-6949-0474 | 02-2607-1085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사내이사 | 이세훈 | 피자마루 외5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77, 4층, 5층, 6층(화곡동, 존스프라자)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이영준 | 02-6949-0474 | 02-2607-1085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감사 | 임복례 | 피자마루 외5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77, 4층, 5층, 6층(화곡동, 존스프라자)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이영준 | 02-6949-0474 | 02-2607-1085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 인수·합병 여부 | 기업명 | 영업표지 | 인수·합병일 | 주 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가맹본부가 다른 | 해당없음 | | | | |

| | | | | |
|------------------------|------|--|--|--|
|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 |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 해당없음 |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피자마루]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피자마루 | 마루 : 꼭대기 (피자맛의 꼭대기) |
| 상 호 | 피자마루 00점 | |
| 상표(서비스표) | | 상 표등록번호 : 41-0247917 서비스표등록번호 : 41-0151660 |
| | | 상표 출원번호 : 40-2022-0197479 |
| | | 상표 출원번호 : 40-2022-0197482 |
| 광 고 | | < 별첨 1 > |
| | | |
| | | |
|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기능성 웰빙 피자도우와 그 제조방법 및 피자 | 특허 : 제10-0866772호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 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2년 | 13,420,607 | 2,883,966 | 10,536,641 | 9,264,025 | 1,698,790 | 1,473,671 |
| 2023년 | 14,743,335 | 3,000,550 | 11,742,785 | 9,868,084 | 1,678,959 | 1,506,151 |
| 2024년 | 15,837,120 | 2,006,638 | 13,830,482 | 9,917,338 | 2,626,505 | 2,387,704 |

그 근거자료는 <별첨 3>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위 가맹사업 외에 해외수출 및 다른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 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 간 | 직 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이영준 | 대표이사 | 2007.09.~현재 | ㈜푸드존 대표이사 | 대표 이사 |
| | 이지훈 | 이사 | 2019.05.~현재 | ㈜푸드존 이사 | 해외사업 |
| | 이세훈 | 이사 | 2024.07.19.~현재 | ㈜푸드존 주임 | 기획마케팅 업무 |
| | 임복례 | 감사 | 2007.09.~현재 | ㈜푸드존 감사 |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 시 점 | 임원수 | | 직원수 |
|---------------|-----|-----|-----|
| | 상 근 | 비상근 | |
| 2024년 12월 31일 | 4 | - | 34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 | | | | |
|------|--------|---------|------------------|---|
| 가맹본부 | (주)푸드존 | 가맹사업 경영 | 2007.01.10.~현재 | 피자마루(등록번호:20080100739)이라는 영업표지의 피자사업 경영 |
| | | 가맹사업 경영 | 2020.12.23. ~ 현재 | 모던통닭(등록번호:20160757)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
| | | 가맹사업 경영 | 2021.02.05.~현재 | 빠사감김밥(등록번호:20160759)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
| | | 가맹사업 경영 | 2021.02.05.~현재 | 빠사감러브스테인크(등록번호:20170168)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
| | | 가맹사업 경영 | 가맹사업 예정 | 비맨션커피&토스트(등록번호:20220139)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
| | | 가맹사업 경영 | 가맹사업 예정 | 마루업_피치떡(등록번호:20241558)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 (등록신청자) |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
| 피자마루 (서비스표) | 피자전문 식당체인업 등 10건 | 2006.07.31. 출원 2007.07.19. 등록 | 출원 제2006-19356 | (주)푸드존 | 2027.07.19. |
| | | | 등록 제41-0151660 | | |
| 피자마루 (상표) | 피자마루 | 2007.04.12. 출원 2008.01.09. 등록 | 출원 제2007-19715 | (주)푸드존 | 2028.01.09. |
| | | | 등록 제40-0733556 | | |
| 피자마루 (서비스표) | 피자마루 (pizza maru) | 2010.12.29. 출원 2012.03.15. 등록 | 출원 제2010-0033543 | (주)푸드존 | 2022.03.15. |
| | | | 등록 제41-0228572 | | |
| 피자마루 (서비스표) | 피자마루 특허받은 웰빙도우 (pizza maru) | 2011.11.18. 출원 2012.12.27. 등록 | 출원 제2011-0036790 | (주)푸드존 | 2022.12.27. |
| | | | 등록 제41-0247917 | | |
| 피자마루 (상표) | 피자마루 특허받은 웰빙도우 (pizza maru) | 2011.11.18. 출원 2013.02.19. 등록 | 출원 제2011-0064729 | (주)푸드존 | 2023.02.19. |
| | | | 등록 제40-0954277 | | |
| 피자마루 (상표) | 피자마루 (pizza maru) | 2013.04.17. 출원 2014.07.24. 등록 | 출원 제2013-0024657 | (주)푸드존 | 2024.07.24. |
| | | | 등록 제40-1049858 | | |
| 피자마루 (상표) | pizza maru up | 2022.10.28. 출원 | 출원 제2022-0197479 | (주)푸드존 | - |
| 피자마루 (상표) | 피자 마루 up | 2022.10.28. 출원 | 출원 제2022-0197482 | (주)푸드존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피자마루] 가맹사업 현황

1. [피자마루] 을 시작한 날: 2007년 01월 10일 (첫 가맹점 오픈일 기준)

2. [피자마루]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푸드존 | 피자마루 | 이영준 | 2007.01.10. ~ 2021.01.05 |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 944 3,4층 |
| ㈜푸드존 | 피자마루 | 이영준 | 2021.01.06. ~ 현재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77, 4층, 5층, 6층(화곡동, 존스프라자) |

3. [피자마루] 업종

| 영업표지 | 업 종 | |
|------|-----|-----------|
|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피자마루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피자 | 피자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피자마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2.12.31. | | | 2023.12.31. | | | 2024.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572 | 571 | 1 | 525 | 524 | 1 | 499 | 498 | 1 |
| 서울 | 83 | 83 | - | 69 | 69 | - | 62 | 62 | - |
| 부산 | 14 | 14 | - | 11 | 11 | - | 8 | 8 | - |
| 대구 | 25 | 25 | - | 18 | 18 | - | 17 | 17 | - |
| 인천 | 47 | 47 | - | 46 | 46 | - | 44 | 44 | - |
| 광주 | 10 | 10 | - | 10 | 10 | - | 10 | 10 | - |
| 대전 | 42 | 42 | - | 40 | 40 | - | 40 | 40 | - |
| 울산 | 20 | 20 | - | 20 | 20 | - | 20 | 20 | - |
| 세종 | 8 | 8 | - | 8 | 8 | - | 7 | 7 | - |
| 경기 | 150 | 149 | 1 | 138 | 137 | 1 | 129 | 128 | 1 |
| 강원 | 13 | 13 | - | 13 | 13 | - | 12 | 12 | - |
| 충북 | 30 | 30 | - | 28 | 28 | - | 29 | 29 | - |
| 충남 | 36 | 36 | - | 37 | 37 | - | 36 | 36 | - |
| 전북 | 16 | 16 | - | 14 | 14 | - | 16 | 16 | - |
| 전남 | 8 | 8 | - | 8 | 8 | - | 8 | 8 | - |
| 경북 | 27 | 27 | - | 26 | 26 | - | 23 | 23 | - |
| 경남 | 40 | 40 | - | 37 | 37 | - | 36 | 36 | - |

| | | | | | | | | | |
|----|---|---|---|---|---|---|---|---|---|
| 제주 | 3 | 3 | - | 2 | 2 | - | 2 | 2 | - |
|----|---|---|---|---|---|---|---|---|---|

5. 바로 전 3년간 [피자마루]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 도 | 연 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 말 |
|------|-----|-------|-------|-------|-------|-----|
| 2022 | 603 | 8 | - | 40 | 25 | 571 |
| 2023 | 571 | 11 | - | 58 | 30 | 524 |
| 2024 | 524 | 9 | - | 35 | 18 | 498 |

6. [피자마루]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피자마루]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 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업 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 | | | 2022.12.31. | 2023.12.31. | 2024.12.31. |
| 가맹본부 | (주)푸드존 | 모던통닭 | 20160757 | 치킨 | 10/0 | 12/0 | 8/0 |
| | (주)푸드존 | 빠사감김밥 | 20160759 | 분식 | 5/0 | 7/0 | 6/0 |
| | (주)푸드존 | 빠사감리브스 테이크 | 20170168 | 외식 | 1/0 | 0/0 | 0/0 |
| | (주)푸드존 | 비맨션커피&토 스트 | 20220139 | 커피 | 0/1 | 0/1 | 0/0 |
| | (주)푸드존 | 마루업_피치떡 | 20241558 | 피자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피자마루]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지역 | 2024년말 가맹점수 |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면적 3.3m ² 당 | 상한 | 면적 3.3m ² 당 | 하한 | 면적 3.3m ² 당 | |
| 전체 | 498 | 185,553 | 17,816 | 535,481 | 66,208 | 6,872 | 624 | 492곳 산정 |
| 서울 | 62 | 166,594 | 16,988 | 430,950 | 47,883 | 6,872 | 624 | 62곳 산정 |
| 부산 | 8 | 146,911 | 15,067 | 210,172 | 21,017 | 87,411 | 8,741 | 8곳 산정 |
| 대구 | 17 | 160,968 | 15,909 | 303,116 | 30,311 | 45,352 | 4,122 | 17곳 산정 |
| 인천 | 44 | 214,687 | 20,633 | 466,468 | 58,308 | 57,274 | 5,206 | 42곳 산정 |
| 광주 | 10 | 198,332 | 19,833 | 452,945 | 45,294 | 72,810 | 6,619 | 10곳 산정 |

| | | | | | | | | |
|----|-----|---------|--------|---------|--------|---------|--------|---------|
| 대전 | 40 | 218,033 | 21,641 | 442,057 | 44,357 | 42,769 | 3,564 | 40곳 산정 |
| 울산 | 20 | 175,846 | 17,497 | 431,563 | 43,156 | 40,377 | 4,037 | 20곳 산정 |
| 세종 | 7 | 268,471 | 24,781 | 377,684 | 37,768 | 166,073 | 14,537 | 6곳 산정 |
| 경기 | 128 | 184,684 | 18,042 | 535,481 | 59,497 | 20,879 | 1,898 | 127곳 산정 |
| 강원 | 12 | 141,213 | 12,460 | 271,457 | 24,677 | 20,375 | 2,037 | 12곳 산정 |
| 충북 | 29 | 193,432 | 17,695 | 474,738 | 47,473 | 30,379 | 3,037 | 29곳 산정 |
| 충남 | 36 | 201,078 | 19,020 | 386,850 | 64,475 | 22,612 | 2,055 | 35곳 산정 |
| 전북 | 16 | 161,048 | 15,004 | 334,155 | 33,415 | 64,019 | 6,401 | 15곳 산정 |
| 전남 | 8 | 104,967 | 8,232 | 203,205 | 15,260 | 27,075 | 2,461 | 8곳 산정 |
| 경북 | 23 | 168,074 | 14,424 | 387,232 | 32,393 | 83,576 | 5,571 | 23곳 산정 |
| 경남 | 36 | 189,662 | 17,780 | 463,457 | 66,208 | 8,852 | 885 | 36곳 산정 |
| 제주 | 2 | - | - | - | - | - | - | 5곳 미만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text{매출액} = \text{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times 3$$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가맹점 수가 5곳 미만인 지역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푸드존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피자마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
|-------|------------|---------------|
| 2024년 | 498 | 3,225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피자마루] 지사 및 지역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피자마루]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1]쪽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구 분 | 수 단 | 기 간 | 지출 비용 | | | 비 고 |
|-----|-------|-----|---------|---------|---------|-----|
| |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 광고 | 소계 | | 354,838 | 106,451 | 248,387 | |
| | (비공개) | | | | | |
| | (비공개) | | | | | |
| | (비공개) | | | | | |
| | (비공개) | | | | | |
| 판촉 | 소계 | | 478,462 | 478,462 | - | |
| | (비공개) | | | | | |
| | (비공개) | | | | | |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강제 / 권유하지 않으며 가맹점이 환경개선을 원할 경우 판매 촉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거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지점 또는 부서 | 주 소 | 전화번호 |
|---------|-------------|-----------------|--------------|
| 기업은행 | 소사본동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로 82 | 032-344-9915 |

예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신청(가맹점사업자)-예치기관-예치증서발급-예치금지급청구(가맹본부)-지급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 보험인(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 | |
| 보험계약자 | (주)푸드존 | 가맹본부 |
|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 가맹점사업자 | |
| 보험기간 |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
| 보험금액 | 예치금액 | |
| 보장범위 |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
| 지급조건 |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
| 보험금의 수령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평균5개월 소요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피자마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 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보험증권 대체가능) | 확정 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구 분 | 금 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 고 |
|-----|-------|---------------|-----------------------------------|-----------------------------|-----|
| 총 계 | 8,000 | | | | |
| 가맹금 | 5,000 |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 |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 |
| 교육비 | 3,000 |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 분 | 금 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총 계 | 3,000 | | | |
| 계약이행보증금 | 3,000 |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등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구 분 | 금 액 |
|---------|--------|
| 합 계 | 11,000 |
| 가맹비 | 5,000 |
| 교육비 | 3,000 |
| 계약이행보증금 | 3,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구 분 | 지급대상 | 금 액 (39.66㎡ 기준) | 면적 33㎡당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 고 |
|--------|------|--------------------|--------------|--------|-----------|-----------|
| 총계 | | 49,180~51,680 | | | | |
| 주방기기 | 협력업체 | 24,080 | 2,207 | 설치 7일전 | 발주 전 계약해지 | |
| 보조기기 | 협력업체 | 3,200 | 293 | 입고 3일전 | 발주 전 계약해지 | |
| 인테리어 | 협력업체 | 17,400 | 1,595 | 개별계약 | 개별계약 | |
| 간판 | 협력업체 | 3,000~5,000 | - | 개별계약 | 개별계약 | 발주 전 계약해지 |
| 초도물품 | 협력업체 | 1,500~2,000 | - | 개별계약 | 개별계약 | 발주 전 계약해지 |
| 기타 비품류 | 협력업체 | - | | 오픈 전 |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시안 제공, 관리감독, 검사의 대가로 3.3㎡당 200천원(부가세 미포함)를 위 비용과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별도비용: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계약 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 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입지선정에 최대한 노력하나, 가맹점 입지선정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입지선정의 최종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점계설예정자 | 입점 타당성 조사 후 양자간 결정 - 당사 입점기준 1) 상시 거주세대수, 유동인구, 동선, 점포위치 등 기준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당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함 | 파산, 피한정후견인 외 조건 없음 |
| 종업원 | 가맹점주가 채용 | 국내 고용기준에 준함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피자마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등 광고 / 홍보 / 판촉 시 당사가 세부계획 수립 후 비용분담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구 분 | 지급대상 | 금 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 고 |
|-----------------------|------|--------------------|---------------|----------|-------------|-------------------------|
| 로열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 광고분담금 | 가맹본부 | 월간 공급받는 도우 수 × 88원 | 통지 후 7일 이내 | 미 시행시 반환 | 시행 | 광고 및 판촉활동 참조 |
| 판촉분담금 | 가맹본부 |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 | 미 시행시 반환 | 시행 |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필요시 실비 | 교육 실시 10일 이전 | 미 시행시 반환 | 시행 | 교육 필요시 지급 (1회 220,000원)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교육 실시 10일 이전 | | | 교육 필요시 지급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 영업지역 보증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 |
|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가맹본부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 점포환경 개선시 비용 참조 |

| | | | | | | |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 가맹본부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 점포환경 개선시 비용 참조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미지급액 × 연15% | 지급기일 익일부터 | 후불로 반환없음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기준: 2024년) | 내 용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3자물류 사용으로 해당사항 없음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자물류 사용으로 해당사항 없음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당사는 운영매뉴얼을 토대로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운영 · 회계 · 재고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며 월 1회 이상 수시방문 / 유무선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재계약 결격사유가 없으면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피자마루]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맹계약 체결 시 양수인은 아래의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구 분 | 금 액 |
|---------------|--------|
| 합계 | 10,000 |
| 오픈 지원 및 기술지원비 | 4,000 |
| 교육비 | 3,000 |
| 계약이행보증금 | 3,000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원·부재료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하자 있는 원·부재료 등에 대하여는 그 상태를 감안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상환가격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피자마루]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별첨4, 5의 거래상대방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류담당지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림스푸드▶(시흥) : 서울, 경기, 충청지역 / 림스푸드드(익산) : 대전, 전라도지역 /

대상푸드 : 부산,울산,대구 경상도지역/ 엔젤푸드 : 서울,경기, 강원도지역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공급회사별 물류담당지역

림스푸드(시흥) : 서울, 경기, 충청지역 / 림스푸드드(익산) : 대전, 전라도지역 /

대상푸드 : 부산,울산,대구 경상도지역/ 엔젤푸드 : 서울,경기, 강원도지역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피자마루]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주)대상푸드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있으나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매출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피자마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가 [피자마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 고 |
|------------------|--------------------------|---|-------------------|
| 콤비네이션피자와 피자류 27종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 해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진행됨 |
| 스파게티와 사이드 메뉴 5종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카다로그 참조)

(단위: 원)

|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 | 가격 통보 방법 | 비 고 |
|------------|----------------|-----------|----------------------|
| 콤비네이션피자 | 8,900 | 가맹계약 전 숙지 | 가격 변동시 가맹점주와 협의 후 결정 |
| 기타 피자류 26종 | 6,900 ~ 24,900 | 가맹계약 전 숙지 | 가격 변동시 가맹점주와 협의 후 결정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의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 판매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피자전문점 | 피자마루 | 해당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를 기준으로 설정. 다만, 【지형·지물】로 상권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조정하여 설정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지도나 내용을 별첨한 경우 별첨이 우선)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지형·지물이란: 산, 하천, 4차선도로이상, 공원, 지하철, 철로, 담벼락, 고가도로 등 인위적으로 지역 단절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지역 안에 존재하는 백화점, 할인점, 행사매장, 양판점, 관공서, 지하상가, 학교, 기업, 병원, 전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의 특수공간(본 계약 체결 이후 신설되는 것 포함)의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피자마루'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피자마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농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4 | 99.85% | 0.15% | 0% |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4 | 0% |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피자마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십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십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십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 |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39조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9조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39조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9조 |
| ○ [피자마루]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9조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39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점사업자가 원 . 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4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40조 |

| | |
|---|-----|
|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40조 |
|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4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0조 |
|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 40조 |
| ○ 영업상 비밀공개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 | 4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4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개량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4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 . 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4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4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4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40조 |
| ○ 가맹계약 제22조 매장운영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7조 제품의 종류와 가격 및 판매, 제32조 제조물책임, 제33조 영업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40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4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40조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40조 |

| |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4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4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4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40조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40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 가맹지원팀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의 희망에 따라 양도자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여 계약하거나 신규 가맹계약으로 선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도양수 시 양수인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맹 계약체결시 재오픈에 따른 오픈 지원 및 기술지원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본부 승인시 가능 | 모든 권리의무 | |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 |
| 업무위탁 | 불가능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계약 존속 또는 계약종료 후 2년 동안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피자마루]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동종의 가맹사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자의 명의로 변경 후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종사할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종료 후에는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경업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피자마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오전 11시 ~ 오후 11시 | 구정과 추석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영업 | 문의: 가맹지원팀 |

영업시간은 점포 여건 및 유사업종의 영업시간, 고객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본 계약체결 시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귀하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하가 합리적인 사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하기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휴업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휴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1명 이상 | 직접 근무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현장 방문 또는 유무선 관리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
| 매장 청결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1회/월 | 가맹지원/평가팀 | |
| 친절도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 1회/월 | 가맹지원/평가팀 | |
| 품질 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1회/월 | 가맹지원/평가팀 | |

가맹점 평가는 년 1~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피자마루]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 비고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 광고 전체 행사 | 브랜드 및 상품광고 | 광고비의 30% | 광고비 7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전체가맹점의 50% 동의)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
| |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 점모집광고 | 광고비의 30% | 광고비 7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 | |
| | 가맹점 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 |
| 판촉행사 | 통상적인 전체행사 | 균등 부담 | 균등 부담 |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전체가맹점의 70% 동의)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 월별 판촉 행사 |
| 기타 개별행사 | 행사에 따라 달라짐 | | | 상동 | |

▶ 월 분담하는 광고분담금은 광고지출비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가맹지원팀과 협의 후 진행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 | 관련조문 |
|--|------|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 42조 |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 계약 조항 |
|---|-------|
|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 당사자 중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일금 오십만원(₩500,000) X 10개월(단, 10개월 미만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함) | 40조 |
|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일(日) 당 일금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41조 |
| ①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4조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36일내외 |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36 | |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36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D-21~20 | |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D-20 | |
| 가맹금 예치 | 기업은행 | D-20(1일) | 페이지 참조 |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D-20(1일) | |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17(1일) | 페이지 참조 |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작업 시작 점주 위생교육 (구청위생과, 요식업조합 신청)확인 가맹점 매장 전화 신청 | D-14(12일) | 페이지 참조 |
| 기계 발주 | 주방 기기 및 부자재 발주 | D-10 | |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교육장 교육(2명) 10일 교육 | D-7~4(10일) | |
| 인테리어 완료 | 기계 입고, 가스공사 설비 및 인테리어 완료 | D-4 | |
| 식자재 및 부자재 입고 | 식자재 및 오픈 전단지 입고 | D-4 | |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

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 |
|--------------|--|
| 점포환경개선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 지급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비용부담 제외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 고 |
|--------|-------|------|------|------|-----|
| 개점행사비 | 해당없음 | | | | |
| 판매촉장려금 | 해당없음 | | | | |

| | | | | | |
|-------------|------|--|--|--|--------------------|
| 판촉지원 | 해당없음 | | | | |
|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 해당없음 | | | | |
| 반품지원 | 해당없음 | | | | |
| 마일리지 | 해당없음 | | | | ※차후 진행시 사전협의 |
| CRM | 해당없음 | | | | |
| 테스터 | 해당없음 | | | |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 고 |
|---------------|--|--|---|--------------|
| 가맹본부 요청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 부담 | 문의: 가맹관리팀 |
|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문의: 가맹관리팀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피자마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 한 | 비 고 |
|-------|-----------------------------------|--------------|------------------|--------------------------|
| 신규 교육 | * 아래 참조 | 실습교육 및 집단강의 |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필수 교육 본사교육장 10일 교육 |
| 수시 교육 | 품질,서비스,위생교육 | 서비스교육 및 집단강의 | 필요시 | 필수 교육 |
| 보수 교육 |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 아래 참조 | 실습교육 및 집단 강의 | 필요시 | 필수 교육 |

가) 신규교육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자마루가맹점의 경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교육훈련 전(全)과정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수료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교육수료증을 교부 받은 이후에 가맹점운영권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교육훈련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여 2명이 입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 인원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1명당 금 오십만원(₩500,000원, 1인당 영업방법전수비)의 교육비를 추가로 가맹본부에게 납입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10일(본사 및 현장교육)동안 시행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회사소개/가맹사업의 이해·고객관리·원부자재관리/조리교육·POS시스템·발주관리·재고관리·점포기기관리·안전관리, 작업/인사관리·점포회계/세무등 가맹점운영교육과 고객응대법법 · 주요상품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가맹본부는 교육훈련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하며, 수료 기준과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수료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

나. 불합격기준 :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가맹점사업자및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중 1인이라도 불합격인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교육 2회 이상 결근 시

다. 불합격자 재교육기간: 4일(이론1일+OJT2일+평가/수료1일)

라. 재교육비용 : 금 500,000원(식대, 강사료 등, 피교육점주 부담)

마. 재교육규정 : 재교육종료 후 평가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무효화 및 가맹점운영권상실

나)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가맹본부가 시행하는 매장평가점수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와 점 운영 시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이 6개월에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따릅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피자마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 | 비고 |
|-------|-----------------|-------------|-----------|
| 신규 교육 | 10일(본사 및 현장교육) | 3,000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1일 4시간 (연 2회이상) | 교육회수당 : 200 | |
| 보수 교육 | 신 메뉴 및 매장관리 등 | 교육회수당 : 500 | 필요시 이수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신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오픈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경기 | 역곡1호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8-3 105 |
| |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9년 10개월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135,468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text{매출액} = \text{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times 3$ |

<별첨 1> 간판 이미지

피자마루



피자마루엔치킨



피자마루업(TAKE OUT/DELIVERY)

| | 백색 배경 | 초록 배경 | 검정 배경 |
|-----|-------|-------|-------|
| 기본형 | | | |
| 가로형 | | | |
| 측면 | | | |

<별첨 2> 재무현황(2024년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3> 가맹점 권장 물품 (OPEN시 필요 설비 & 기물)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4> 가맹점 권장/강제 물품 (원부자재_물류)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공급회사별 물류담당지역

림스푸드(시흥) : 서울, 경기, 충청지역 / 림스푸드(익산) : 대전, 전라도지역 /

대상푸드 : 부산, 울산, 대구 경상도지역/ 엔젤푸드 : 서울, 경기, 강원도지역

<별첨 5> 가맹점 권장/강제 물품 (납품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공급회사별 물류담당지역

림스푸드(시흥) : 서울, 경기, 충청지역 / 림스푸드(익산) : 대전, 전라도지역 /

대상푸드 : 부산, 울산, 대구 경상도지역/ 엔젤푸드 : 서울, 경기, 강원도지역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 | | | |
|-------------|---|----------------|------|
| 가맹본부 | (주)푸드존 | 영업표지 | 피자마루 |
| 제공확인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 | |
| | 작성해주세요 ⇒ | | |
| 제공일시 | 년 월 일 시 | 제공받은 장소 | |
| 주 소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 No. | 상호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푸드존 대표이사 이 영 존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 | | | |
|-------------|---|----------------|------|
| 가맹본부 | (주)푸드존 | 영업표지 | 피자마루 |
| 제공확인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 | |
| | 작성해주세요 ⇒ | | |
| 제공일시 | 년 월 일 시 | 제공받은 장소 | |
| 주 소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 No. | 상호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주)푸드존 대표이사 이 영 존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